구리역 롯데캐슬 더 센트럴 분양광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분양모집 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구리역 롯데캐슬더센트럴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구리역롯데캐슬더센트럴.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은 구리역 롯데캐슬 더 센트럴 홈페이지(http://구리역롯데캐슬더센트럴.com)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정하여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에 입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분양사업장 (http://구리역롯데캐슬더센트럴.com) 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방문기록부 작성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방문기록부 운영예정)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발열과 기침 및 목 아픔 등 호흡기질환의 증상이 나타나는 유증상자)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입장이 불가합니다.

※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및 수분양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 는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 (2023.3.23)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구리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 최대 2타입 청약 가능하며 타입별 1실 당첨 가능합니다. (1인 최대 2실 당첨가능)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

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3.3.28.(화)	2023.3.31.(금) 16:00 이후	2023.4.3.(월) ~ 4.4.(화) 10:00~17:00
방 법	인터넷청약 (09:00~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홈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구리역 롯데캐슬더센트럴 견본주택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9번지)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	×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 내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거 구리시 균형개발과 제2023-1호 분양신고(2023.03.14)로 분양신고필증 득함.
■ 사업 시행자 : 인창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롯데건설
■ 분양대행사 : ㈜내스디
■ 공급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80-3번지 일대 (교육보호구역 해당없음)
■ 대지면적 : 35,423㎡ 중 오피스텔 대지지분 3,408㎡
■ 건축물 연면적 : 22,002.6709㎡ (업무시설(오피스텔) : 21,092.5881㎡, 근린생활시설 : 910.0828㎡)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3층 ~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지상19층 (오피스텔)
■ 공급규모 : 오피스텔 지하 3층 ~ 지상 19층, 1개동 총 251실 (일반분양 235세대, 조합분 13세대, 보류지 3세대)

■ 주차대수 : 총 321대 / 오피스텔 314(1.25)대, 근린생활시설 7대 (기계식주차 시공여건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다소 감소할 수 있음)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 내진설계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5의 2호 규정에 의거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음. 설계기준은 KBC 2009이며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구조부재, 구조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지역계수 (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 (IE)	내진설계범주	건물 중요도	반응수정계수 (R)
0.176	S_C	I_E=1.2	C	I	4.0

■ 본 오피스텔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 Ⅶ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169(g)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실, ㎡)

구분	타입	공급호실	주택형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계약면적(㎡)	
				벽체공유(㎡)	세대공유(㎡)					
업무시설 (오피스텔)	23A	44	23.0143	2.7954	10.8885	36.6982	2.3631	13.8050	52.8663	8.4422
	36A1	108	36.0114	3.4167	16.9310	56.3591	3.6977	21.6013	81.6581	13.2098
	45B	18	45.4861	3.8159	21.6096	70.9116	4.6705	27.2846	102.8667	16.6854
	45C	30	45.5291	4.1531	21.7163	71.3985	4.6749	27.3104	103.3838	16.7011
	48D	17	48.6869	3.8148	23.2876	75.7893	4.9992	29.2046	109.9931	17.8595
	48E	17	48.4955	3.9129	23.2641	75.6725	4.9795	29.0898	109.7418	17.7893
	48F	1	48.5565	3.8760	23.2411	75.6736	4.9858	29.1263	109.7858	17.8117

▷ 오피스텔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실, 원)

타입	공급 호실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분양금액 (①+②+③)	대지비 (①)	건축비 (②)	부가세 (③)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후 14일	2023.08.14.	2023.12.22.	2024.06.10.	2024.11.11.	2025.04.14.	2025.09.08.	입주지정일
23A	44	최저가	167,900,000	83,496,670	76,730,300	7,673,030	10,000,000	6,790,000	16,790,000	16,790,000	16,790,000	16,790,000	16,790,000	16,790,000	50,370,000
		최고가	178,400,000	88,718,320	81,528,800	8,152,880	10,000,000	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53,520,000
36A1	108	최저가	260,000,000	129,298,000	118,820,000	11,882,000	10,000,000	1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78,000,000
		최고가	278,700,000	138,597,510	127,365,900	12,736,590	10,000,000	1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83,610,000
45B	18	최저가	314,000,000	156,152,200	143,498,000	14,349,800	10,000,000	2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94,200,000
		최고가	337,800,000	167,987,940	154,374,600	15,437,460	10,000,000	2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101,340,000
45C	30	최저가	319,500,000	158,887,350	146,011,500	14,601,150	10,000,000	2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95,850,000

		최고가	340,500,000	169,330,650	155,608,500	15,560,850	10,000,000	2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102,150,000
48D	17	최저가	324,000,000	161,125,200	148,068,000	14,806,8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최고가	346,400,000	172,264,720	158,304,800	15,830,480	10,000,000	2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103,920,000
48E	17	최저가	324,000,000	161,125,200	148,068,000	14,806,8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최고가	346,400,000	172,264,720	158,304,800	15,830,480	10,000,000	2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103,920,000
48F	1	최고가	347,800,000	172,960,940	158,944,600	15,894,460	10,000,000	2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104,340,000

▷ 공통 사항

■ 상기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은 타입, 층, 향, 위치 등을 감안하여 적의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분양 금액은 타입별 최고 및 최저 금액으로 표시되었으며, 호실별 타입, 면적, 층, 향, 위치 등에 따라 분양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 내역, 공급 금액, 납부 일정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각 호실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분양 금액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 (안목치수선) 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호실당 계약 면적과 분양 금액에는 주차장, 건축 설비실 (전기실, 기계실 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벽체 공용 면적은 호실별 바닥 면적에서 전용 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각 타입별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대지 지분은 타입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공부상 대지 면적과 대지 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에 따라 계약 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차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체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전체 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지상 1층 복도 면적 (오피스텔 전용구간 제외) 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상 2층 ~ 지상 19층의 복도 면적은 해당층의 오피스텔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분양 금액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사용 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지정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 금액의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분양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 금액의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도로 교통, 지하철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의 해제 및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샘플하우스 면적 및 높이는 실제 시공 면적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건물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 (대지비 제외) 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사항들은 향후 정부의 정책, 해당 사업자의 사정으로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한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 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청약 신청 자격

■ 최초 분양 광고일 (2023.3.23.)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단, 재외동포 (재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및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기 오피스텔은 1인당 최대 2실만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3실 이상 중복 청약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 모두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 일정 및 청약 안내

■ 청약 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 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2023.3.28. (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접수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① 접속 :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방문 접수 : 10:00~16:00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시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금 및 납부 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0원 (금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홈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 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 (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취급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시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은행 지점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분은 청약 이전에 전국 시중 은행 지점 (국민, 신한, 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한국시티)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를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1일 및 1회 이체 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시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은행] 지점 방문 청약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시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은행 전지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1. 청약 신청서 [청약통장 취급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시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2. 본인 확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동일 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분리 세대)
3. 본인 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의 경우, 청약자의 도장)
4. 청약 신청금
5. 청약 신청금 환불용 통장 사본 1부 (청약 신청인 명의)
6.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1. 청약 신청서 [청약통장 취급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시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 인감계 1부 제출)
5. 청약 신청금</td></tr>
</table>

		6. 청약 신청금 환불용 통장 사본 1부 (청약 신청 법인 명의) 7. 본인 확인증 : -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대표이사 본인의 본인 확인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본인 확인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위임장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 광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창구접수는 청약통장 취급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시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 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 자격 및 신청 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소득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 등 기타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분양사업자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분양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 자격을 확인 및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 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하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 광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의 청약 신청금은 전액 환불되며,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환불 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 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당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추첨 및 발표

■ 추첨 일시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3년 3월 31일 (금)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및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 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청약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해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계약기간 내 분양대금납부계좌로 계약금납부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2항 규정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 신청금 환불 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신청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 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 계약 체결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3년 4월 3일 (월) ~ 2023년 4월 4일 (화)	10:00 ~ 17:00	구리역 롯데캐슬더센트럴 견본주택 (구리시 인창동 266-9번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납부	신한은행	100-036-111441	인창씨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롯데건설(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01홍길동)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신한은행	100-036-111480	인창씨구역주택재개발정바사업조합, 롯데건설(주)	

- 계약금 납부 : 상기 지정한 분양 대금 납부 계좌에 무통장 입금 (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 하여야 하며, 상기 지정한 분양 대금 납부 계좌 이외 계좌 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 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상기 분양 대금 납부 계좌로 지정된 납부일 (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잔금은 입주 지정 개시일) 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기 바라며,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0501홍길동”)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급계약서를 참조하여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당첨된 호수 확인 후 입금하기 바라며, 계좌 오류 및 착오 납입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구비 서류 안내

구 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1.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2.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 수분양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사본 1통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시 구비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위임장 1부 (수분양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 견본주택에 양식 비치) 2. 수분양자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3.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대리인의 도장 5.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사본 1통
법인 계약 시	1.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5.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제출) 6. 신분증 : [대표이상 본인 계약시] 대표이사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1부 (계약자인 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 견본주택에 양식 비치) 7.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사본 1통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 광고일(2023.3.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계약 구비 서류는 해당 호실 수량에 맞춰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 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대출 금액 : 상기 오피스텔 분양 금액의 최대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알선합니다. (단, 정부 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대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중 일부를 시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이하 대출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계약자는 융자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시행자 또는 대출금융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제출,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 받은 금액은 분양 금액 납부 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 분양 대금의 60%는 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의 신용 평가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방식으로 대출될 수 있으며, 분양 사업자가 통보한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자가 계약자의 중도금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부담하며, 시행자의 대출 이자 부담 기간 만료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 다음 날부터는 계약자가 대출 이자를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시행자가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아울러 대출 이자율 및 대출금 비율은 대출금융기관과 계약자의 대출 약정에 따르며, 정부 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 조건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분양 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는 경우 분양 사업자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에 상응하는 금전적 혜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분양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의 미이행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시행자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자 개인의 신용 상태, 한도 초과,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출 제한 등) 변경, 국제 금융 위기상황 발생, 대출금융기관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집단 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 되거나 불가할 경우 분양 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 사업자에게 해당 중도금 약정일의 연기 또는 최초 지정한 대출금융 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한 추가 중도금 대출 등의 알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 신용 불량 등재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 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 사업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금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고,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분양 사업자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분양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시행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호실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분양 사업자가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현장 위치 및 현장 주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 가격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며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의 배치 구조 및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 광고는 건축허가 사항 설계도서에 준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 귀책 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 규약을 준수합니다.
■ 기타 계약 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준공 및 입주 안내

■ 준공 예정일 : 2026년 3월 예정 (준공예정일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준공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 입주 예정일 : 2026년 3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 지정 개시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 대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 지연 보상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안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개시일 1개월 전)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자는 별도 통지합니다. (사전방문 통지는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공통 유의 사항

■ 분양 면적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0.3025 또는 (㎡)÷3.3058)

■ 각종 광고 및 홍보물 (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 계획 및 각종 시설 (도로, 공공청사,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 조성 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행 주체 및 국가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과세자) 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양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자는 입점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 (주민등록등본 포함) 당사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 금액의 차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 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 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으로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 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 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 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 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 부분의 시설물 (계단, 지하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지하, 지상),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 등은 최종 설계(변경)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 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통신 시설 가입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바닥, 벽, 천장의 가구로 가려지는 비노출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 계획 상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 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의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원할한 진행과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은 정확한 일정을 지정하여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시행자가 분양 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는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9의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 사항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사항

- 본 분양 목적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당시의 제 법규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입별,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2% 이하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과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일부 호실은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선행세대는 수분양자(입주예정자)의 관람용이 아닌 시공상의 품질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227호. 2021.11.12)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지하, 지상),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허가도서 등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의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사업부지 인접도로의 도로계획,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 계획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서 임의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 옥외 노대 설치공간 등 공용부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 및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변동 사실(주민등록표 등·초본 1통, 집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명기)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 신청 및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같으며 청약 신청 및 계약자의 주소 변경 통지서가 당사로 도달했는지의 입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분양 대금은 시공사의 공사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로 지출되며, 계약자의 중도 해지에 의한 환불금 반환 의무 및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 의무는 분양사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모형 및 유인물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의 명칭 및 동·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 날인이 없는 분양 계약서는 무효이며, 분양 계약서가 발행되었더라도 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본 분양 계약은 무효로 하고, 미리 교부된 분양 계약서는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관련 시설물의 위치, 설계변경, 대지지분 변경 등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분 부터 분양사업자는 계약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시 분양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대출이자(연체이자 및 대출관련 수수료 등 제반 비용 포함) 등을 공제합니다.

■ 민원

- 아래 안내사항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안내사항을 부정하는 행위, 이를 기초로 한 분양(공급)계약 조건의 변경 또는 해제(지)요구, 사업관계자 또는 제3자(행정기관 포함)에 대한 민원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인창C구역 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시설 및 구조물, 인근 건축 사업계획, 교통여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창C구역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시설(하수종말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 배수펌프장, 유수지, 저류지) 및 구조물(전신주, 가로수, 한전패드, 가스정압기, 지하차도,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 및 분양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미관, 악취, 진동, 백연, 인근도로 통과차량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인창C구역 및 주변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타 분양 목적물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분양목적물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사양 및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목적물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영상물 등), 인테리어, 모형에 표현된 입면디자인, 외벽 색채 및 마감재, 사인,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착공 후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지반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측벽디자인, 창호형태 및 재질 등), 오피스텔 단지명 사인물, 동현관, 지하출입구, 난간의 디테일, DA(Dry Area)등 외부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 입주시, 선행 행정행위(건축허가)에 부가해서 이루어지는 후행 행정행위(사용승인등)에 대하여 부당한 방해행위 등으로 지연을 초래할 경우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일반계약자 및 사업주체에 발생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을 수인·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는 시공상의 하자부분에 한하여 보수의 책임을 지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여 분양하는 타 상품과의 상품, 외관, 마감사양, 엘리베이터 개소 및 커뮤니티 종류, 면적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입집니다.
- 본 오피스텔 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인창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입주시기, 사업추진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호실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정책 추진에 따른 구리남양주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학생배정계획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인창C구역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주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오피스텔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보행자도로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사회재난, 펜데믹 등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후 계약자(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부분,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하여 법적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외벽마감, 보행자출입구, 주차장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실제 시공시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 실외기실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전기 인입 지상개폐기는 한국전력협의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수 있고 지중 인입선 일부가 단지 내로 경유하도록 설계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인조석, 엔지니어드 스톤, 시트, 타일의 경우 흠집, 결, 무늬, 이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통합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등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분양사업자(시행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호실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호실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 및 이용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 특성상 저층호실 및 차량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재활용보관소 등과 인접하여 배치된 일부호실은 소음(경보음, 상가이용자 및 기타 보행자에 의한 소음 포함), 냄새, 미관저하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수목 투사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지하주차장 램프, 동출입구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시 호실 내 우물천정의 깊이 및 폭,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기울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연도(연기배출구), 정화조, DA, 휀룸 등에 인접한 호실에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의 설계 및 구조에 따라 공용부 외부공간에 인접한 호실은 소음 및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공용파이프 샤프트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옥탑층의 옥외 난간은 건축법 등 높이기준에 따라 투시형 철재난간 또는 유리난간으로 설치됩니다.
- 정화조시설(연도 등)로 인한 인접세대 악취 발생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업부지 동측으로 상업시설이 건립중이며, 개발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기계실 주차 및 지상기계실 주차시설로 인해 인접세대 진동,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실에는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됨. 추후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관리비용이 발생됩니다.
-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스피커는 별도 구매품목이며 스마트홈IOT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 광고

- 계약자는 분양사업자(시행자)가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광고홍보물(대표홈페이지 내 이미지, 동영상, 리플렛, 공급안내서 등)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분양상담직원, 부동산중개인(법인), 기타 개인이 분양사업자(시행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작하여 개인 매체(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시, 배포, 전파한 사항에 대해 분양사업자(시행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 광고홍보물 여부는 분양사업자(시행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 등 인쇄물과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컴퓨터그래픽(CG, 영상물 등), 호실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23㎡(A)타입, 48㎡(D)타입의 샘플하우스가 설치되고, 그 외 미설치된 36㎡(A1)타입, 45㎡(B)타입, 45㎡(C)타입, 48㎡(E)타입, 48㎡(F)타입은 모형 및 분양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건축허가도서 등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에 설치 된 단지, 단위호실 모형은 대지 주변현황, 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마감재, 색상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호실의 샘플하우스는 필요한 설비 기기, 현관 출입문 및 화장실문 등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3D 모델링 및 샘플하우스를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 상품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형 및 컴퓨터그래픽(CG) 등에 표현된 외벽 디자인 및 입면의 줄눈형태, 입면 마감재의 입면 돌출, 표현, 재료 색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 호실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디퓨저, 점검구의 개수 및 위치 등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고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호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대상이 아니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등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 제품사양,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을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계약자 취향 등을 사유로 각 호실별로 위치변경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외벽 등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제작된 참고용 제품으로 실제 본 공사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임, 손잡이, 유리 등 구성요소의 형태, 재질, 색채, 사양, 열림(개폐)방향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시 설계기준,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견본주택 천장, 벽 등에 설치된 DP용 조명은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기,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 홈네트워크 기기류, 팬코일유니트등을 포함한 가전제품에 대하여 본 공사시 위치 및 규격, 용량,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자재품 단종,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 가격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는 것을 포함)
- 전기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오피스텔 (공용부)
- 오피스텔은 인접 대지, 도로, 보행 가로변 등에 인접한 실에는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됩니다.
- 주차장은 공유 시설로서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체는 계약자 및 입주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점포별 분할 면적이나 위치 지정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자주식주차 및 기계식주차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계식주차 시공여건에 따라 지하주차장 주차대수가 다소 감소 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전용부)
- 모든 타입은 견본주택에 유니트 설치, 모형도 제작, CG 제작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별 향에 따라 일조 차이가 상이하고, 가구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 실의 도어 방향은 피난 방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오니, 계약 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내 샤워실은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 단차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 제품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 내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줄눈 위치 및 각 악세사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 (카달로그 포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자재의 경우 본 공사시 자재의 특성 상 패턴 및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는 향후 사용성 향상, 미관 개선 등을 고려하여 유리 두께 및 창호 사이즈, 프레임 두께, 설치 위치, 개폐 방향, 디자인 등 제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 방식으로 적용 됩니다.
- 실 내부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등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내의 도어, 기타 도어의 업체와 사양 (형태, 규격, 손잡이, 기타 하드웨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온도 차이가 클 경우, 충분한 환기가 부족할 경우 실내외 벽체에 결로 또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구, 욕실장 및 수납 가구가 설치되는 후면 및 바닥, 천장 부분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 가구, 욕실장 등 수납 공간의 크기와 마감 자재는 실형별로 상이하며,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설계 도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 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침실붙박이장 개폐시 커텐과 간섭으로 사용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벽부형 블라인드 설치를 권장합니다.
- 거실 가구 배치시 빌트인가전 도어 개폐로 인한 공간을 감안하여 배치바랍니다.
- 거실창문은 관련법규에 의한 배연창으로 설치됩니다.

■ 구리역롯데캐슬더센트럴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3-104-0000300	44,967,16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종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 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분양광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분양대금의 채권 양도 등 관련)

① “갑”은 주택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관련 표준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인창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분양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은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없이 승낙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 관계자 명칭

사업주체 (시행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인창씨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롯데건설(주)	㈜내스디
경기도 구리시 수택천로33번길 25, 3층 (수택동)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50-2)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05 펜트라우스 105-1202
법인등록번호 284271-0003009	법인등록번호 110111-0014764	법인등록번호 135811-0093369

■ 견본주택 안내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9번지
- 분양문의 : 1533-3477

- 홈페이지 : http://구리역롯데캐슬더센트럴.com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분양가표

No.	층&호	면적 (m2)	타입 (TYPE)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14일	2023.08.14.	2023.12.22.	2024.06.10.	2024.11.11.	2025.04.14.	2025.09.08.	
1	201	45.5291	45C	158,887,350	146,011,500	14,601,150	319,500,000	10,000,000	2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95,850,000
2	202	45.4861	45B	156,152,200	143,498,000	14,349,800	314,000,000	10,000,000	2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94,200,000
3	204	36.0114	36A1	129,298,000	118,820,000	11,882,000	260,000,000	10,000,000	1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78,000,000
4	205	36.0114	36A1	129,298,000	118,820,000	11,882,000	260,000,000	10,000,000	1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78,000,000
5	206	36.0114	36A1	129,298,000	118,820,000	11,882,000	260,000,000	10,000,000	1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78,000,000
6	207	36.0114	36A1	129,298,000	118,820,000	11,882,000	260,000,000	10,000,000	1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78,000,000
7	208	36.0114	36A1	129,298,000	118,820,000	11,882,000	260,000,000	10,000,000	1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78,000,000
8	209	36.0114	36A1	129,298,000	118,820,000	11,882,000	260,000,000	10,000,000	1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78,000,000
9	210	48.6869	48D	161,125,200	148,068,000	14,806,800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10	211	48.4955	48E	161,125,200	148,068,000	14,806,800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11	214	23.0143	23A	83,496,670	76,730,300	7,673,030	167,900,000	10,000,000	6,790,000	16,790,000	16,790,000	16,790,000	16,790,000	16,790,000	16,790,000	50,370,000
12	301	45.5291	45C	159,583,570	146,651,300	14,665,130	320,900,000	10,000,000	2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96,270,000
13	302	45.4861	45B	156,848,420	144,137,800	14,413,780	315,400,000	10,000,000	21,540,000	31,540,000	31,540,000	31,540,000	31,540,000	31,540,000	31,540,000	94,620,000
14	303	45.5291	45C	159,583,570	146,651,300	14,665,130	320,900,000	10,000,000	2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96,270,000
15	304	36.0114	36A1	129,845,030	119,322,700	11,932,270	261,100,000	10,000,000	1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78,330,000
16	305	36.0114	36A1	129,845,030	119,322,700	11,932,270	261,100,000	10,000,000	1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78,330,000
17	306	36.0114	36A1	129,845,030	119,322,700	11,932,270	261,100,000	10,000,000	1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78,330,000
18	307	36.0114	36A1	129,845,030	119,322,700	11,932,270	261,100,000	10,000,000	1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78,330,000
19	308	36.0114	36A1	129,845,030	119,322,700	11,932,270	261,100,000	10,000,000	1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78,330,000
20	309	36.0114	36A1	129,845,030	119,322,700	11,932,270	261,100,000	10,000,000	1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78,330,000
21	310	48.6869	48D	161,821,420	148,707,800	14,870,780	325,400,000	10,000,000	22,540,000	32,540,000	32,540,000	32,540,000	32,540,000	32,540,000	32,540,000	97,620,000
22	311	48.4955	48E	161,821,420	148,707,800	14,870,780	325,400,000	10,000,000	22,540,000	32,540,000	32,540,000	32,540,000	32,540,000	32,540,000	32,540,000	97,620,000
23	314	23.0143	23A	83,844,780	77,050,200	7,705,020	168,600,000	10,000,000	6,860,000	16,860,000	16,860,000	16,860,000	16,860,000	16,860,000	16,860,000	50,580,000
24	401	45.5291	45C	160,279,790	147,291,100	14,729,110	322,300,000	10,000,000	22,230,000	32,230,000	32,230,000	32,230,000	32,230,000	32,230,000	32,230,000	96,690,000
25	402	45.4861	45B	157,544,640	144,777,600	14,477,760	316,800,000	10,000,000	21,680,000	31,680,000	31,680,000	31,680,000	31,680,000	31,680,000	31,680,000	95,040,000
26	403	45.5291	45C	160,279,790	147,291,100	14,729,110	322,300,000	10,000,000	22,230,000	32,230,000	32,230,000	32,230,000	32,230,000	32,230,000	32,230,000	96,690,000
27	404	36.0114	23A1	130,392,060	119,825,400	11,982,540	262,200,000	10,000,000	1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78,660,000
28	405	36.0114	23A1	130,392,060	119,825,400	11,982,540	262,200,000	10,000,000	1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78,660,000
29	406	36.0114	23A1	130,392,060	119,825,400	11,982,540	262,200,000	10,000,000	1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78,660,000
30	407	36.0114	23A1	130,392,060	119,825,400	11,982,540	262,200,000	10,000,000	1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78,660,000
31	408	36.0114	23A1	130,392,060	119,825,400	11,982,540	262,200,000	10,000,000	1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78,660,000
32	409	36.0114	23A1	130,392,060	119,825,400	11,982,540	262,200,000	10,000,000	1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26,220,000	78,660,000
33	410	48.6869	48D	162,517,640	149,347,600	14,934,760	326,800,000	10,000,000	2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98,040,000
34	411	48.4955	48E	162,517,640	149,347,600	14,934,760	326,800,000	10,000,000	2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98,040,000
35	412	23.0143	23A	84,192,890	77,370,100	7,737,010	169,300,000	10,000,000	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50,790,000
36	413	23.0143	23A	84,192,890	77,370,100	7,737,010	169,300,000	10,000,000	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50,790,000

37	414	23.0143	23A	84,192,890	77,370,100	7,737,010	169,300,000	10,000,000	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16,930,000	50,790,000
38	501	45.5291	45C	160,976,010	147,930,900	14,793,090	323,700,000	10,000,000	22,370,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97,110,000
39	502	45.4861	45B	158,240,860	145,417,400	14,541,740	318,200,000	10,000,000	2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95,460,000
40	503	45.5291	45C	160,976,010	147,930,900	14,793,090	323,700,000	10,000,000	22,370,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97,110,000
41	504	36.0114	36A1	130,939,090	120,328,100	12,032,810	263,300,000	10,000,000	1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78,990,000
42	505	36.0114	36A1	130,939,090	120,328,100	12,032,810	263,300,000	10,000,000	1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78,990,000
43	506	36.0114	36A1	130,939,090	120,328,100	12,032,810	263,300,000	10,000,000	1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78,990,000
44	507	36.0114	36A1	130,939,090	120,328,100	12,032,810	263,300,000	10,000,000	1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78,990,000
45	508	36.0114	36A1	130,939,090	120,328,100	12,032,810	263,300,000	10,000,000	1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78,990,000
46	509	36.0114	36A1	130,939,090	120,328,100	12,032,810	263,300,000	10,000,000	1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26,330,000	78,990,000
47	510	48.6869	48D	163,213,860	149,987,400	14,998,740	328,200,000	10,000,000	2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98,460,000
48	511	48.4955	48E	163,213,860	149,987,400	14,998,740	328,200,000	10,000,000	2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98,460,000
49	512	23.0143	23A	84,541,000	77,690,000	7,769,000	170,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51,000,000
50	513	23.0143	23A	84,541,000	77,690,000	7,769,000	170,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51,000,000
51	514	23.0143	23A	84,541,000	77,690,000	7,769,000	170,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51,000,000
52	601	45.5291	45C	161,672,230	148,570,700	14,857,070	325,100,000	10,000,000	2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97,530,000
53	602	45.4861	45B	158,937,080	146,057,200	14,605,720	319,600,000	10,000,000	2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95,880,000
54	603	45.5291	45C	161,672,230	148,570,700	14,857,070	325,100,000	10,000,000	2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97,530,000
55	604	36.0114	36A1	131,486,120	120,830,800	12,083,080	264,400,000	10,000,000	1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79,320,000
56	605	36.0114	36A1	131,486,120	120,830,800	12,083,080	264,400,000	10,000,000	1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79,320,000
57	606	36.0114	36A1	131,486,120	120,830,800	12,083,080	264,400,000	10,000,000	1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79,320,000
58	607	36.0114	36A1	131,486,120	120,830,800	12,083,080	264,400,000	10,000,000	1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79,320,000
59	608	36.0114	36A1	131,486,120	120,830,800	12,083,080	264,400,000	10,000,000	1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79,320,000
60	609	36.0114	36A1	131,486,120	120,830,800	12,083,080	264,400,000	10,000,000	1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79,320,000
61	610	48.6869	48D	163,910,080	150,627,200	15,062,720	329,600,000	10,000,000	22,960,000	32,960,000	32,960,000	32,960,000	32,960,000	32,960,000	32,960,000	98,880,000
62	611	48.4955	48E	163,910,080	150,627,200	15,062,720	329,600,000	10,000,000	22,960,000	32,960,000	32,960,000	32,960,000	32,960,000	32,960,000	32,960,000	98,880,000
63	612	23.0143	23A	84,889,110	78,009,900	7,800,990	170,700,000	10,000,000	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51,210,000
64	613	23.0143	23A	84,889,110	78,009,900	7,800,990	170,700,000	10,000,000	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51,210,000
65	614	23.0143	23A	84,889,110	78,009,900	7,800,990	170,700,000	10,000,000	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17,070,000	51,210,000
66	701	45.5291	45C	162,368,450	149,210,500	14,921,050	326,500,000	10,000,000	2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97,950,000
67	702	45.4861	45B	159,633,300	146,697,000	14,669,700	321,000,000	10,000,000	2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96,300,000
68	703	45.5291	45C	162,368,450	149,210,500	14,921,050	326,500,000	10,000,000	2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97,950,000
69	704	36.0114	36A1	132,033,150	121,333,500	12,133,350	265,500,000	10,000,000	1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79,650,000
70	705	36.0114	36A1	132,033,150	121,333,500	12,133,350	265,500,000	10,000,000	1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79,650,000
71	706	36.0114	36A1	132,033,150	121,333,500	12,133,350	265,500,000	10,000,000	1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79,650,000
72	707	36.0114	36A1	132,033,150	121,333,500	12,133,350	265,500,000	10,000,000	1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79,650,000
73	708	36.0114	36A1	132,033,150	121,333,500	12,133,350	265,500,000	10,000,000	1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79,650,000
74	709	36.0114	36A1	132,033,150	121,333,500	12,133,350	265,500,000	10,000,000	1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79,650,000
75	710	48.6869	48D	164,606,300	151,267,000	15,126,700	331,000,000	10,000,000	2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76	711	48.4955	48E	164,606,300	151,267,000	15,126,700	331,000,000	10,000,000	2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77	712	23.0143	23A	85,237,220	78,329,800	7,832,980	171,400,000	10,000,000	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51,420,000
78	713	23.0143	23A	85,237,220	78,329,800	7,832,980	171,400,000	10,000,000	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51,420,000
79	714	23.0143	23A	85,237,220	78,329,800	7,832,980	171,400,000	10,000,000	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51,420,000
80	801	45.5291	45C	163,064,670	149,850,300	14,985,030	327,900,000	10,000,000	2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98,370,000
81	802	45.4861	45B	160,329,520	147,336,800	14,733,680	322,400,000	10,000,000	22,240,000	32,240,000	32,240,000	32,240,000	32,240,000	32,240,000	32,240,000	96,720,000

82	803	45.5291	45C	163,064,670	149,850,300	14,985,030	327,900,000	10,000,000	2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98,370,000
83	804	36.0114	36A1	132,580,180	121,836,200	12,183,620	266,600,000	10,000,000	1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79,980,000
84	805	36.0114	36A1	132,580,180	121,836,200	12,183,620	266,600,000	10,000,000	1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79,980,000
85	806	36.0114	36A1	132,580,180	121,836,200	12,183,620	266,600,000	10,000,000	1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79,980,000
86	807	36.0114	36A1	132,580,180	121,836,200	12,183,620	266,600,000	10,000,000	1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79,980,000
87	808	36.0114	36A1	132,580,180	121,836,200	12,183,620	266,600,000	10,000,000	1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79,980,000
88	809	36.0114	36A1	132,580,180	121,836,200	12,183,620	266,600,000	10,000,000	1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79,980,000
89	810	48.6869	48D	165,302,520	151,906,800	15,190,680	332,400,000	10,000,000	2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99,720,000
90	811	48.4955	48E	165,302,520	151,906,800	15,190,680	332,400,000	10,000,000	2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99,720,000
91	812	23.0143	23A	85,585,330	78,649,700	7,864,970	172,100,000	10,000,000	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51,630,000
92	813	23.0143	23A	85,585,330	78,649,700	7,864,970	172,100,000	10,000,000	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51,630,000
93	814	23.0143	23A	85,585,330	78,649,700	7,864,970	172,100,000	10,000,000	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51,630,000
94	901	45.5291	45C	163,760,890	150,490,100	15,049,010	329,300,000	10,000,000	22,930,000	32,930,000	32,930,000	32,930,000	32,930,000	32,930,000	32,930,000	98,790,000
95	902	45.4861	45B	161,025,740	147,976,600	14,797,660	323,800,000	10,000,000	22,38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97,140,000
96	903	45.5291	45C	163,760,890	150,490,100	15,049,010	329,300,000	10,000,000	22,930,000	32,930,000	32,930,000	32,930,000	32,930,000	32,930,000	32,930,000	98,790,000
97	904	36.0114	36A1	133,127,210	122,338,900	12,233,890	267,700,000	10,000,000	1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80,310,000
98	905	36.0114	36A1	133,127,210	122,338,900	12,233,890	267,700,000	10,000,000	1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80,310,000
99	906	36.0114	36A1	133,127,210	122,338,900	12,233,890	267,700,000	10,000,000	1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80,310,000
100	907	36.0114	36A1	133,127,210	122,338,900	12,233,890	267,700,000	10,000,000	1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80,310,000
101	908	36.0114	36A1	133,127,210	122,338,900	12,233,890	267,700,000	10,000,000	1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80,310,000
102	909	36.0114	36A1	133,127,210	122,338,900	12,233,890	267,700,000	10,000,000	1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80,310,000
103	910	48.6869	48D	165,998,740	152,546,600	15,254,660	333,800,000	10,000,000	2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100,140,000
104	911	48.4955	48E	165,998,740	152,546,600	15,254,660	333,800,000	10,000,000	2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100,140,000
105	912	23.0143	23A	85,933,440	78,969,600	7,896,960	172,800,000	10,000,000	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51,840,000
106	913	23.0143	23A	85,933,440	78,969,600	7,896,960	172,800,000	10,000,000	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51,840,000
107	914	23.0143	23A	85,933,440	78,969,600	7,896,960	172,800,000	10,000,000	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17,280,000	51,840,000
108	1001	45.5291	45C	164,457,110	151,129,900	15,112,990	330,700,000	10,000,000	2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99,210,000
109	1002	45.4861	45B	161,721,960	148,616,400	14,861,640	325,200,000	10,000,000	2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97,560,000
110	1003	45.5291	45C	164,457,110	151,129,900	15,112,990	330,700,000	10,000,000	2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99,210,000
111	1004	36.0114	36A1	133,674,240	122,841,600	12,284,160	268,800,000	10,000,000	1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80,640,000
112	1005	36.0114	36A1	133,674,240	122,841,600	12,284,160	268,800,000	10,000,000	1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80,640,000
113	1006	36.0114	36A1	133,674,240	122,841,600	12,284,160	268,800,000	10,000,000	1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80,640,000
114	1007	36.0114	36A1	133,674,240	122,841,600	12,284,160	268,800,000	10,000,000	1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80,640,000
115	1008	36.0114	36A1	133,674,240	122,841,600	12,284,160	268,800,000	10,000,000	1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80,640,000
116	1009	36.0114	36A1	133,674,240	122,841,600	12,284,160	268,800,000	10,000,000	1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80,640,000
117	1010	48.6869	48D	166,694,960	153,186,400	15,318,640	335,200,000	10,000,000	2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100,560,000
118	1011	48.4955	48E	166,694,960	153,186,400	15,318,640	335,200,000	10,000,000	2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100,560,000
119	1012	23.0143	23A	86,281,550	79,289,500	7,928,950	173,500,000	10,000,000	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52,050,000
120	1013	23.0143	23A	86,281,550	79,289,500	7,928,950	173,500,000	10,000,000	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52,050,000
121	1014	23.0143	23A	86,281,550	79,289,500	7,928,950	173,500,000	10,000,000	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17,350,000	52,050,000
122	1101	45.5291	45C	165,153,330	151,769,700	15,176,970	332,100,000	10,000,000	2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99,630,000
123	1102	45.4861	45B	162,418,180	149,256,200	14,925,620	326,600,000	10,000,000	2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97,980,000
124	1103	45.5291	45C	165,153,330	151,769,700	15,176,970	332,100,000	10,000,000	2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99,630,000
125	1104	36.0114	36A1	134,221,270	123,344,300	12,334,430	269,900,000	10,000,000	1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80,970,000
126	1105	36.0114	36A1	134,221,270	123,344,300	12,334,430	269,900,000	10,000,000	1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80,970,000

127	1106	36.0114	36A1	134,221,270	123,344,300	12,334,430	269,900,000	10,000,000	1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80,970,000
128	1107	36.0114	36A1	134,221,270	123,344,300	12,334,430	269,900,000	10,000,000	1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80,970,000
129	1108	36.0114	36A1	134,221,270	123,344,300	12,334,430	269,900,000	10,000,000	1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80,970,000
130	1109	36.0114	36A1	134,221,270	123,344,300	12,334,430	269,900,000	10,000,000	1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26,990,000	80,970,000
131	1110	48.6869	48D	167,391,180	153,826,200	15,382,620	336,600,000	10,000,000	2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100,980,000
132	1111	48.4955	48E	167,391,180	153,826,200	15,382,620	336,600,000	10,000,000	2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100,980,000
133	1112	23.0143	23A	86,629,660	79,609,400	7,960,940	174,200,000	10,000,000	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52,260,000
134	1113	23.0143	23A	86,629,660	79,609,400	7,960,940	174,200,000	10,000,000	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52,260,000
135	1114	23.0143	23A	86,629,660	79,609,400	7,960,940	174,200,000	10,000,000	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17,420,000	52,260,000
136	1201	45.5291	45C	165,849,550	152,409,500	15,240,950	333,500,000	10,000,000	2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100,050,000
137	1202	45.4861	45B	163,114,400	149,896,000	14,989,600	328,000,000	10,000,000	2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98,400,000
138	1203	45.5291	C45	165,849,550	152,409,500	15,240,950	333,500,000	10,000,000	2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100,050,000
139	1204	36.0114	36A1	134,768,300	123,847,000	12,384,700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140	1205	36.0114	36A1	134,768,300	123,847,000	12,384,700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141	1206	36.0114	36A1	134,768,300	123,847,000	12,384,700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142	1207	36.0114	36A1	134,768,300	123,847,000	12,384,700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143	1208	36.0114	36A1	134,768,300	123,847,000	12,384,700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144	1209	36.0114	36A1	134,768,300	123,847,000	12,384,700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145	1210	48.6869	48D	168,087,400	154,466,000	15,446,600	338,000,000	10,000,000	2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146	1211	48.4955	48E	168,087,400	154,466,000	15,446,600	338,000,000	10,000,000	2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147	1212	23.0143	23A	86,977,770	79,929,300	7,992,930	174,900,000	10,000,000	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52,470,000
148	1213	23.0143	23A	86,977,770	79,929,300	7,992,930	174,900,000	10,000,000	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52,470,000
149	1214	23.0143	23A	86,977,770	79,929,300	7,992,930	174,900,000	10,000,000	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17,490,000	52,470,000
150	1301	45.5291	45C	166,545,770	153,049,300	15,304,930	334,900,000	10,000,000	2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100,470,000
151	1302	45.4861	45B	163,810,620	150,535,800	15,053,580	329,400,000	10,000,000	2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98,820,000
152	1303	45.5291	45C	166,545,770	153,049,300	15,304,930	334,900,000	10,000,000	2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100,470,000
153	1304	36.0114	36A1	135,315,330	124,349,700	12,434,970	272,100,000	10,000,000	1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81,630,000
154	1305	36.0114	36A1	135,315,330	124,349,700	12,434,970	272,100,000	10,000,000	1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81,630,000
155	1306	36.0114	36A1	135,315,330	124,349,700	12,434,970	272,100,000	10,000,000	1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81,630,000
156	1307	36.0114	36A1	135,315,330	124,349,700	12,434,970	272,100,000	10,000,000	1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81,630,000
157	1308	36.0114	36A1	135,315,330	124,349,700	12,434,970	272,100,000	10,000,000	1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81,630,000
158	1309	36.0114	36A1	135,315,330	124,349,700	12,434,970	272,100,000	10,000,000	1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81,630,000
159	1310	48.6869	48D	168,783,620	155,105,800	15,510,580	339,400,000	10,000,000	2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101,820,000
160	1311	48.4955	48E	168,783,620	155,105,800	15,510,580	339,400,000	10,000,000	2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101,820,000
161	1312	23.0143	23A	87,325,880	80,249,200	8,024,920	175,600,000	10,000,000	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52,680,000
162	1313	23.0143	23A	87,325,880	80,249,200	8,024,920	175,600,000	10,000,000	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52,680,000
163	1314	23.0143	23A	87,325,880	80,249,200	8,024,920	175,600,000	10,000,000	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52,680,000
164	1401	45.5291	45C	167,241,990	153,689,100	15,368,910	336,300,000	10,000,000	23,63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100,890,000
165	1402	45.4861	45B	164,506,840	151,175,600	15,117,560	330,800,000	10,000,000	23,080,000	33,080,000	33,080,000	33,080,000	33,080,000	33,080,000	33,080,000	99,240,000
166	1403	45.5291	45C	167,241,990	153,689,100	15,368,910	336,300,000	10,000,000	23,63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100,890,000
167	1404	36.0114	36A1	135,862,360	124,852,400	12,485,240	273,200,000	10,000,000	1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81,960,000
168	1405	36.0114	36A1	135,862,360	124,852,400	12,485,240	273,200,000	10,000,000	1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81,960,000
169	1406	36.0114	36A1	135,862,360	124,852,400	12,485,240	273,200,000	10,000,000	1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81,960,000
170	1407	36.0114	36A1	135,862,360	124,852,400	12,485,240	273,200,000	10,000,000	1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81,960,000
171	1408	36.0114	36A1	135,862,360	124,852,400	12,485,240	273,200,000	10,000,000	1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81,960,000

172	1409	36.0114	36A1	135,862,360	124,852,400	12,485,240	273,200,000	10,000,000	1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81,960,000
173	1410	48.6869	48D	169,479,840	155,745,600	15,574,560	340,800,000	10,000,000	2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102,240,000
174	1411	48.4955	48E	169,479,840	155,745,600	15,574,560	340,800,000	10,000,000	2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102,240,000
175	1412	23.0143	23A	87,673,990	80,569,100	8,056,910	176,300,000	10,000,000	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52,890,000
176	1413	23.0143	23A	87,673,990	80,569,100	8,056,910	176,300,000	10,000,000	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52,890,000
177	1414	23.0143	23A	87,673,990	80,569,100	8,056,910	176,300,000	10,000,000	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17,630,000	52,890,000
178	1501	45.5291	45C	167,938,210	154,328,900	15,432,890	337,700,000	10,000,000	23,770,000	33,770,000	33,770,000	33,770,000	33,770,000	33,770,000	33,770,000	101,310,000
179	1502	45.4861	45B	165,203,060	151,815,400	15,181,540	332,200,000	10,000,000	23,220,000	33,220,000	33,220,000	33,220,000	33,220,000	33,220,000	33,220,000	99,660,000
180	1503	45.5291	45C	167,938,210	154,328,900	15,432,890	337,700,000	10,000,000	23,770,000	33,770,000	33,770,000	33,770,000	33,770,000	33,770,000	33,770,000	101,310,000
181	1504	36.0114	36A1	136,409,390	125,355,100	12,535,510	274,300,000	10,000,000	1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82,290,000
182	1505	36.0114	36A1	136,409,390	125,355,100	12,535,510	274,300,000	10,000,000	1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82,290,000
183	1506	36.0114	36A1	136,409,390	125,355,100	12,535,510	274,300,000	10,000,000	1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82,290,000
184	1507	36.0114	36A1	136,409,390	125,355,100	12,535,510	274,300,000	10,000,000	1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82,290,000
185	1508	36.0114	36A1	136,409,390	125,355,100	12,535,510	274,300,000	10,000,000	1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82,290,000
186	1509	36.0114	36A1	136,409,390	125,355,100	12,535,510	274,300,000	10,000,000	1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82,290,000
187	1510	48.6869	48D	170,176,060	156,385,400	15,638,540	342,200,000	10,000,000	24,220,000	34,220,000	34,220,000	34,220,000	34,220,000	34,220,000	34,220,000	102,660,000
188	1511	48.4955	48E	170,176,060	156,385,400	15,638,540	342,200,000	10,000,000	24,220,000	34,220,000	34,220,000	34,220,000	34,220,000	34,220,000	34,220,000	102,660,000
189	1512	23.0143	23A	88,022,100	80,889,000	8,088,900	177,000,000	10,000,000	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53,100,000
190	1513	23.0143	23A	88,022,100	80,889,000	8,088,900	177,000,000	10,000,000	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53,100,000
191	1514	23.0143	23A	88,022,100	80,889,000	8,088,900	177,000,000	10,000,000	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53,100,000
192	1601	45.5291	45C	168,634,430	154,968,700	15,496,870	339,100,000	10,000,000	2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101,730,000
193	1602	45.4861	45B	165,899,280	152,455,200	15,245,520	333,600,000	10,000,000	23,360,000	33,360,000	33,360,000	33,360,000	33,360,000	33,360,000	33,360,000	100,080,000
194	1603	45.5291	45C	168,634,430	154,968,700	15,496,870	339,100,000	10,000,000	2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101,730,000
195	1604	36.0114	36A1	136,956,420	125,857,800	12,585,780	275,400,000	10,000,000	1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82,620,000
196	1605	36.0114	36A1	136,956,420	125,857,800	12,585,780	275,400,000	10,000,000	1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82,620,000
197	1606	36.0114	36A1	136,956,420	125,857,800	12,585,780	275,400,000	10,000,000	1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82,620,000
198	1607	36.0114	36A1	136,956,420	125,857,800	12,585,780	275,400,000	10,000,000	1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82,620,000
199	1608	36.0114	36A1	136,956,420	125,857,800	12,585,780	275,400,000	10,000,000	1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82,620,000
200	1609	36.0114	36A1	136,956,420	125,857,800	12,585,780	275,400,000	10,000,000	1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82,620,000
201	1610	48.6869	48D	170,872,280	157,025,200	15,702,520	343,600,000	10,000,000	24,360,000	34,360,000	34,360,000	34,360,000	34,360,000	34,360,000	34,360,000	103,080,000
202	1611	48.4955	48E	170,872,280	157,025,200	15,702,520	343,600,000	10,000,000	24,360,000	34,360,000	34,360,000	34,360,000	34,360,000	34,360,000	34,360,000	103,080,000
203	1612	23.0143	23A	88,370,210	81,208,900	8,120,890	177,700,000	10,000,000	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53,310,000
204	1613	23.0143	23A	88,370,210	81,208,900	8,120,890	177,700,000	10,000,000	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53,310,000
205	1614	23.0143	23A	88,370,210	81,208,900	8,120,890	177,700,000	10,000,000	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17,770,000	53,310,000
206	1701	45.5291	45C	169,330,650	155,608,500	15,560,850	340,500,000	10,000,000	2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102,150,000
207	1702	45.4861	45B	166,595,500	153,095,000	15,309,500	335,000,000	10,000,000	2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00,500,000
208	1704	36.0114	36A1	137,503,450	126,360,500	12,636,050	276,500,000	10,000,000	1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82,950,000
209	1705	36.0114	36A1	137,503,450	126,360,500	12,636,050	276,500,000	10,000,000	1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82,950,000
210	1706	36.0114	36A1	137,503,450	126,360,500	12,636,050	276,500,000	10,000,000	1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82,950,000
211	1707	36.0114	36A1	137,503,450	126,360,500	12,636,050	276,500,000	10,000,000	1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82,950,000
212	1708	36.0114	36A1	137,503,450	126,360,500	12,636,050	276,500,000	10,000,000	1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82,950,000
213	1709	36.0114	36A1	137,503,450	126,360,500	12,636,050	276,500,000	10,000,000	1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82,950,000
214	1710	48.6869	48D	171,568,500	157,665,000	15,766,500	345,000,000	10,000,000	2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103,500,000
215	1711	48.4955	48E	171,568,500	157,665,000	15,766,500	345,000,000	10,000,000	2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103,500,000
216	1712	23.0143	23A	88,718,320	81,528,800	8,152,880	178,400,000	10,000,000	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53,520,000

217	1713	23.0143	23A	88,718,320	81,528,800	8,152,880	178,400,000	10,000,000	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53,520,000
218	1714	23.0143	23A	88,718,320	81,528,800	8,152,880	178,400,000	10,000,000	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17,840,000	53,520,000
219	1802	45.4861	45B	167,291,720	153,734,800	15,373,480	336,400,000	10,000,000	23,640,000	33,640,000	33,640,000	33,640,000	33,640,000	33,640,000	33,640,000	100,920,000
220	1804	36.0114	36A1	138,050,480	126,863,200	12,686,320	277,600,000	10,000,000	1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83,280,000
221	1805	36.0114	36A1	138,050,480	126,863,200	12,686,320	277,600,000	10,000,000	1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83,280,000
222	1806	36.0114	36A1	138,050,480	126,863,200	12,686,320	277,600,000	10,000,000	1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83,280,000
223	1807	36.0114	36A1	138,050,480	126,863,200	12,686,320	277,600,000	10,000,000	1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83,280,000
224	1808	36.0114	36A1	138,050,480	126,863,200	12,686,320	277,600,000	10,000,000	1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83,280,000
225	1809	36.0114	36A1	138,050,480	126,863,200	12,686,320	277,600,000	10,000,000	1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83,280,000
226	1810	48.6869	48D	172,264,720	158,304,800	15,830,480	346,400,000	10,000,000	2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103,920,000
227	1811	48.4955	48E	172,264,720	158,304,800	15,830,480	346,400,000	10,000,000	2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103,920,000
228	1902	45.4861	45B	167,987,940	154,374,600	15,437,460	337,800,000	10,000,000	2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101,340,000
229	1904	36.0114	36A1	138,597,510	127,365,900	12,736,590	278,700,000	10,000,000	1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83,610,000
230	1905	36.0114	36A1	138,597,510	127,365,900	12,736,590	278,700,000	10,000,000	1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83,610,000
231	1906	36.0114	36A1	138,597,510	127,365,900	12,736,590	278,700,000	10,000,000	1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83,610,000
232	1907	36.0114	36A1	138,597,510	127,365,900	12,736,590	278,700,000	10,000,000	1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83,610,000
233	1908	36.0114	36A1	138,597,510	127,365,900	12,736,590	278,700,000	10,000,000	1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83,610,000
234	1909	36.0114	36A1	138,597,510	127,365,900	12,736,590	278,700,000	10,000,000	1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83,610,000
235	1910	48.5565	48F	172,960,940	158,944,600	15,894,460	347,800,000	10,000,000	2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104,340,000